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뇌물죄의 적용범위

Bribery Crimes Of Guilt Coverage Against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김 준 성(Kim, Jun Sung)*

ABSTRACT

These days, the most serious problem about public servants is the crime concerning corruption or bribery. Every time a new president takes office, Korean presidents rigorously urge the implementation of incorruptible obligation to public servants, but the corruption of president's relatives and close associate is continually going on. The existing government like the successive governments institutionalized anti-corruption policy, but the crim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have continually happened in our society. The crim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corruption related to power scandals are mainly bribery crimes. The bribery crime i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and has large wavelength in our society as well as in public service personnel's. This kind of bribery crime is hard to be punished criminally because it doesn't have any outward forms of bribery. Also, it is the kind of crime from which citizens don't feel direct harm. We should establish the best suitable system to prevent bribery crimes because it cause big problems in our society.

The writer reviewed applicable schemes criminally to prevent public service personnel's bribery crimes.

Firstly, we need to concretize and legalize the concept of bribery crimes for settlement of bribery crimes' coverage and objet target.

Secondly, if duties act is concerned with public benefit, the person who is not a public service personnel should be punished criminally according to article 129 or 132 of Criminal Law, article 4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article 5 of Punishment of the Law Regarding a Particular Economy Act.

Thirdly, To disparitie in sentencing issues that could happen for applying to bribery crimes in the existing law, downward adjustment is needed at least to article between article 3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article 132 of Criminal Law. Both bribetaker and briber should be punished in article 4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The upward adjustment of bribery amount is needed in article 2 and item 1 of Penalties for Certain Economic Crimes Act, and spacial situations are considered and the extra weight of the penalty amount should be added in item 2.

Lastly, Article 134 of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because it could be believed that forfeiture and supplementary collection are not included when asking bribery. The provisions of the disposal of the annular should be legalized to be effective tracking and taking-back in article 6 of Officials Seized on Crime as a Special Act.

Key words: bribery, corruption, anti-corruption, public service personnel's crime, concept of bribery

* 대구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공직사회의 가장 큰 폐단은 부정부패와 연루되는 사건일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대통령들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청렴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은 쉽사리 끊이지 않았다.¹⁾ 급기야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 및 청와대 최측근의 비리에 대하여 직접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하였다.²⁾ 이러한 사실은 현 정부도 역대정부처럼 반부패정책³⁾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특히 권력과 연루된 공무원의 부패방지는 결코 쉽지 않은 사안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한 공무원범죄는 주로 뇌물범죄의 형태에 속하며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특히 뇌물범죄는 그 구조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부패범죄의 유형이다.⁴⁾ 하지만 부패범죄의 대표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 뇌물범죄는 외형적으로 뇌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서 형사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⁵⁾

일반적으로 ‘뇌물’이라는 용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뇌물’은 일반인들과 달리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한정되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뇌물’이라는 용어는 공무원에 관한 범죄로서 형법상 뇌물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이득을 취하거나 이들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로 국가기능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국가의 기강과 기능을 침해하는 뇌물죄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부패범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 1) 특히 권력형 뇌물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통치자의 사정의지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그래서 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임웅,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수뢰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269면).
- 2)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와 연루된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청와대 최측근들의 비리 및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건으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리에 대하여 2012년 7월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중앙일보, 2012. 7. 24일자 인터넷뉴스 참조, <http://joongang.joinsmsn.com>).
- 3) 예컨대 공직자재산등록 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 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허가와 관련해 당시 시장으로부터 주무팀장에 이르기까지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이 광범위하게 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연합뉴스, 2012. 7. 26일자 인터넷뉴스 참조, 정태진기자, “전임시장까지... 아산시 공무원 줄줄이 쇠고랑”, <http://yonhapnews.co.kr>).
- 5) 조병선, “‘신중’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101면 이하 참조.

다. 공무원범죄는 대부분 음성적인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다.⁶⁾ 즉 그 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이 그들의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주로 공무원범죄는 부조리와 모순이 한계에 달했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며 아울러 그 사후에 국가 및 국민적 손실은 엄청 크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최적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뇌물죄의 특성(Ⅱ)을 살펴보고, 뇌물죄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Ⅲ)를 검토한 후 뇌물죄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의 입법적 개선방안(Ⅳ)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뇌물죄의 특성

1. 형법상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유형

일반적으로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 및 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가기능을 부패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가벌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계없이 저지른 행위도 범죄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은 주로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예컨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선거방해죄(제128조), 수뢰죄(제129조), 제3자 뇌물제공죄(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제1항), 사후수뢰죄(제131조 제2항), 알선수뢰죄(제132조), 뇌물공여죄(제133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공무원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일체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⁷⁾ 아울러 형법상 공무원범죄는 직무위배죄, 직

6) 연성진, “한국의 공무원범죄 추세분석, 1964-2005”,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117면.

7) 오영근, “공무원범죄와 양형 -뇌물죄의 양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93면.

권남용죄, 뇌물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범죄 중에서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과장이 가장 큰 범죄가 뇌물죄라고 할 수 있다.⁸⁾ 특히 뇌물수수는 뇌물관행으로서 공직자들이 직무상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흔한 공직자들의 비리유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경유착 등으로 국가기강이 흔들리는 공직부패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이다. 역사적으로 뇌물죄는 관료들에 의하여 자행되어 왔었던 신분범죄였으며 상대적으로 형도 가볍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뇌물죄는 직무범죄의 성격으로 변천되어 형법상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⁹⁾

2. 뇌물죄의 특성과 뇌물의 개념

(1) 형법 및 특가법상 뇌물죄의 규정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이득을 취하거나 이들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범죄이다. 즉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¹⁰⁾ 이러한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이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가 있으며, 단순수뢰죄의 파생적 구성요건으로서 제3자뇌물공여죄(제130조), 사후수뢰죄(제131조 제3항), 알선수뢰죄(제132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단순수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제1항), 부정처사후수뢰죄(제131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증뢰죄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뇌물공여죄(제133조 제1항)와 뇌물공여에 쓸 목

8)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된 일명 율곡사업비리사건을 들 수 있다. 즉 1993년 7월 17일경 대검중수부는 감사원의 고발로 30조원이 투입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A18기종을 현세대 전투기 F16기종으로 변경)과 관련된 뇌물스캔들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검중수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과정에서 1억불의 리베이트를 받은 노태우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관료와 군장성들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9) 진계호, “뇌물죄에서의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4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449면.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9, 827면; 박상기,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1, 641면; 이재상,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2, 718면; 임웅, 형법각론, 개정판 보정, 2006, 820면.

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제3자증뢰물전달죄(제133조 제2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뇌물죄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형법의 수뢰자측 범죄의 여러 유형에 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3조에서는 행위자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알선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형법상의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및 알선수뢰죄의 주체를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6조에서는 증뢰죄의 상대방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뇌물죄의 규정은 공공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도 여러 개별 법규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뇌물죄의 이러한 광범위한 규정은 오히려 뇌물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수뢰사건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뇌물관련 법규를 입법적으로 간명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¹¹⁾

(2)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뇌물의 개념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들의 견물생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뇌물죄의 본질은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하여 뇌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있다는 로마법적 사고와 뇌물죄의 불법내용이 부정한 직무행위의 매수에 있다고 보는 게르만법의 사고가 대립되어 왔었다.¹²⁾ 즉 전자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뇌물죄의 보호법익으로 파악함에 반하여¹³⁾, 후자는 공무원의 직무의 순수성(純粹性) 내지 불가침성(不可侵性)에 그 본질이 있다고 파악한다.¹⁴⁾ 그러나 불가매수성설은 직무행위에 수수료가 따르는 경우와 알선수뢰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¹⁵⁾ 그리고 순수성설에 따라 직무행위의 순수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적 직무행위가 없는 경우의 수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¹⁶⁾ 그래서 오늘날에는 양자

11) 특히 김홍준 판사는 실무상 수뢰사건의 경우에 복잡한 체계로 입법되어 있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사안에 따라 공정한 판결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김홍준, “뇌물의 의미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123면 참조).

12) 한정환, “뇌물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뇌물과 직무행위의 대가관계”, 형사법연구 제9호, 한국형사법학회, 1996, 264면.

13) 배중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813면. 임웅, 형법각론, 820면.

14) RG 72, 176; BGHSt 10, 241.

15)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제2판, 삼지원, 2006, 798면.

16)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775면.

를 포괄하거나 동일시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법익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즉 종합설의 견해로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것이다.¹⁷⁾ 최근 판례¹⁸⁾의 입장도 이와 같은 종합설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뇌물죄의 궁극적인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뇌물의 개념과 깊이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뇌물의 개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이익’¹⁹⁾,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²⁰⁾,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혹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²¹⁾, 그리고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로서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이익’²²⁾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뇌물개념의 정의에서 공통점은 직무와 이익이라는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상호간에 대가관계라고 볼 수 있다. 즉 뇌물은 뇌물 그 자체가 뇌물행위의 객체 또는 증회행위의 수단이다. 그래서 뇌물의 의미는 직무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요건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뇌물 그 자체가 직무와의 대가성(對價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 기타 그에 상응하는 이익으로 매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국가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한다면 뇌물의 개념은 직무관련성으로 인한 행위의 대가관계로서 일체의 유형·무형의 모든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³⁾

하지만 이러한 견해와 달리 뇌물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여 형법상 뇌물의 개념은 재물에 유사한 개념으로서 ‘재산상의 이익’까지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²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예컨대 성상납 등의 향응의 제공은 비재산적 이익이므로 뇌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는 오히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기에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²⁵⁾의 입장도 전술한 견해와 같이 뇌물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

17)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827면; 박상기, 형법각론, 641면; 이재상, 형법각론, 718면; 이형국, 형법각론, 775면.

18)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19)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906면; 이영란, 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771면.

20)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9, 1275면; 박상기, 형법각론, 641면; 배종대, 형법각론, 815면; 이재상, 형법각론, 720면.

2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830면; 손동권, 형법각론,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758면; 이형국, 형법각론, 776면; 이태언, 형법각론, 제4판, 형설출판사, 2009, 639면.

22) 임용, 형법각론, 827면.

23) 김홍준, “뇌물의 의미 -판례를 중심으로-”, 176면.

24) 김창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법의 재해석”,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440면 이하.

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뇌물의 개념은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대가관계’를 규범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교적 의례의 명목으로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증여물이 관례상 승인되고 있는 한도의 것이고, 직무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²⁵⁾ 즉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 또는 ‘성의표시’로 인정되는 범위가 축소된다. 따라서 수뢰자에게 뇌물죄의 입법목적과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III. 뇌물죄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1. 뇌물죄의 적용대상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뇌물수수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여기서 중재인(仲裁人)이란 중재법 제3조에 의한 중재인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에 의한 중재위원 등이 법령에 의하여 현재 중재인의 지위에서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적 업무의 조정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재인과 달리 여기서 의미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공무원개념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형법상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의 개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최근에도 판례²⁷⁾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적어도 공무수행의 정도가 단순노무와 같은 기계적인 업무가 아닌 지적인 업무가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우편집배원의 경우에도 직무행위로 인한 대가로 금품 등의 수수를 하였더라

2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26) 정웅석, “부패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연세법학연구 제9권 제1호, 연세법학회, 2002, 31면.

27)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면 국가기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들도 공무원으로서의 수뢰죄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²⁸⁾도 있다. 그러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굳이 형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특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뿐만 아니라 특가법 외의 개별 법률에서 형법상의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자를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²⁹⁾ 왜냐하면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기한 공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다. 그래서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가 공익적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일정한 범위의 직무수행자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즉 특가법 제4조의 규정은 결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형법상 공무원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 못지않게 직무행위의 성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며, 또한 특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성이 현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등도 직무행위의 성격상 수뢰죄의 주체로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뢰죄의 주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까지 확장되어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뇌물죄의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뇌물의 수수·요구·약속·알선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은 형법 및 특가법상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다만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경우라면 준공무원으로서 특가법상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특경법 제5조(수재 등의 죄)의 법문을 살펴보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28) 김신규, “뇌물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305면.

2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도618 판결 참조.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로 규정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 뇌물유사한 부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 등의 규정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 뇌물죄의 '뇌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위주체의 신분을 전술한 특가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뇌물범죄의 범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해마다 뇌물범죄의 속성을 지닌 지능적인 수법의 뇌물유사관련범죄가 증가하고 있다.³⁰⁾ 이러한 뇌물유사관련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법적용상의 방안으로서 특가법상 '금품이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뇌물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³¹⁾

IV. 뇌물죄의 적용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

현행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볼 때 우선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는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양형의 불균형문제는 입법적 방안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즉 죄형균형론의 입장에서 적어도 특가법 제3조의 법정형을 형법 제132조에 상응하는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가법 제4조는 특정한 공익상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하고 있다. 판례³²⁾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서 수뢰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판례³³⁾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뢰자와 더불어 증뢰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영기업

30) 실제 혐의자가 뇌물수수 등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뇌물범죄에 있어서는 공여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의하여 유무죄가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뇌물관련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표성수, "뇌물범죄의 입증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법조 제639호, 법조협회, 2009. 12, 182면 이하).

31) 이와 같은 취지로서 김신규 교수는 특별형법상의 뇌물죄유사규정의 '재물 기타 이익', '금품 기타 이익'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문언을 '뇌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신규, "뇌물죄에 관한 연구", 308면 참조).

32)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도618 판결.

33) 판례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 1699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체의 간부직원이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판례의 입장처럼 증뢰자에게 형법 제133조의 증뢰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특가법 제4조에서 수뢰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장된 수뢰죄의 주체에 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은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수뢰자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여자를 공범의 규정에 의하여 증뢰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용에 의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³⁴⁾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가법 제4조에서 증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특가법 제2조는 형법상 수뢰죄와 관련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차등하여 가장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뇌물죄의 불법판단에 있어서 수뢰액이 결과불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개별사실에 존재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뢰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³⁵⁾ 실제 재판에서도 여러 이유를 제시하면서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어 특가법 제2조의 법정형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³⁶⁾

따라서 현행 특가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수뢰액은 현재의 뇌물수수 및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제2항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가중에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인 때, 제2호의 경우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제3호의 경우는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등으로 수뢰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2항의 경우는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의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특수한 사정³⁷⁾이 있는 경우에는 수뢰액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를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형법 제134조는 뇌물의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뇌물의 몰수·추징의 대상이다. 즉 형법 제134조는 동법 제48조의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대한 특칙이다. 따라서 제134조의 규정의 의미는 뇌물을 수수·약속 및 요구한 경우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³⁸⁾ 그러나 제134조의 규정은 뇌물을 수수·약속한 경우는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뇌물요구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34)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윤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뇌물죄의 가중처벌 연구”, 법조 통권 제622호, 법조협회, 2008. 7, 143-144면 참조.

35) 이와 관련하여 입법론적으로 특가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서보학,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58면 참조.

36) 정진연, “공무원범죄 예방 및 대책론”,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167면.

37) 여기서 ‘특수한 사정’은 뇌물수수로부터 수뢰자의 자유롭지 못한 상황 등을 의미한다.

38) 이재상, 형법각론, 728면.

있다. 그래서 제134조에 규정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법문을 “범인이 수수·요구·약속한 뇌물이나 제삼자가 받은 뇌물 및 뇌물에 제공할 이익”으로 개정하는 것이 뇌물죄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³⁹⁾

마지막으로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동법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동법은 뇌물죄를 통하여 직접 획득한 재물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도 몰수한다. 무엇보다도 동법은 공무원범죄에 의한 부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추징의 실효성확보와 집행력 조차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⁴⁰⁾ 즉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액에 따라 환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형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징금 납부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법 제6조에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의 규정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⁴¹⁾

V. 맺음말

지금까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뇌물죄는 뇌물의 형태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부패범죄이기 때문에 우선 뇌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하거나 입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뇌물의 개념은 직무관련성으로 인한 ‘대가관계’로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규정과 특정법 제5조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규정은 뇌물유사한 부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뇌물유사관련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법적용상 법문의 규정을 뇌물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39) 이와 같은 취지로서 김신규 교수는 뇌물죄의 범죄행태와 몰수대상이 일치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신규, “뇌물죄에 관한 연구”, 309면 참조).

40)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및 노태우 사건을 들 수 있다.

41) 이와 같은 취지로서 김용세 교수는 몰수 또는 추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용세, “뇌물규제를 위한 현행법제 : 내용과 한계”, 법학연구 제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279-280면 참조).

한 ‘사교적 의례’ 또는 ‘성의표시’ 등의 범위가 축소되어 뇌물의 범위를 규범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무가 단순 기계적인 업무가 아닌 지적인 업무가 수반되는 것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 및 특가법 제4조의 규정과 특경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 및 ‘공익성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과 ‘금융기관의 임직원’도 직무행위의 성격상 당연히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경우라면 준공무원으로서 뇌물죄의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뇌물죄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형의 불균형문제는 죄형균형론의 입장에서 적어도 특가법 제3조의 법정형을 형법 제132조에 상응하는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특가법 제4조에 수뢰자와 더불어 증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 아울러 특가법 제2조의 제1항 각호의 수뢰액은 현재의 뇌물수수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제2항은 단서조항으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가중에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형법 제134조의 규정은 뇌물을 수수·약속한 경우는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뇌물요구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 동법 제134조에 뇌물요구의 경우에도 명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도록 법문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에 규정된 추적·환수의 실효성을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환형처분의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9.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3판, 도서출판 소진, 2012.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9.
 박상기,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1.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손동권, 형법각론,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오영근/이상용, 뇌물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재상,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2.
 이정원, 형법각론, 제3판, 법지사, 2003.
 이태언, 형법각론, 제4판, 형설출판사, 2009.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임웅, 형법각론, 개정판 보정, 법문사, 2006.
 연성진,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제2판, 삼지원, 2006.

2. 논 문

- 김용세,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체계”, 형사법연구 제8호, 한국형사법학회, 1995.
 ———, “뇌물규제를 위한 현행법제 : 내용과 한계”, 법학연구 제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신규, “뇌물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김창균, “부정부패에 대한 형법의 재해석”,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김홍준, “뇌물의 의미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10호, 한국법학원, 2009.
 김혜경, “뇌물죄 자신신고자에 대한 특례”, 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서보학,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1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성낙현, “독일형법의 뇌물죄규정”, 영남법학 제10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연성진, “한국의 공무원범죄 추세분석, 1964-2005”,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오영근, “공무원범죄와 양형 -뇌물죄의 양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우영기, “증뢰죄와 배임수재죄의 재검토”, 법조 통권 제523호, 법조협회, 2000. 4.

- 이승호, “배임수증제죄의 본질과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 법조 통권 614호, 법조협회, 2007. 11.
- 이윤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뇌물죄의 가중처벌 연구”, 법조 통권 제622호, 법조협회, 2008. 7.
- 임용,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 정웅석, “부패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연세법학연구 제9권 제1호, 연세법학회, 2002.
- 정진연, “공무원범죄 예방 및 대책론”,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 조병선, “‘신중’의 뇌물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 진계호, “뇌물죄에서의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4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표성수, “뇌물범죄의 입증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법조 제639호, 법조협회, 2009. 12.
- 한정환, “뇌물죄의 보호범의 그리고 뇌물과 직무행위의 대가관계”, 형사법연구 제9호, 한국형사법학회, 1996.

투고일자 : 2012. 10. 12

게재일자 : 2012. 12. 15

국문초록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뇌물죄의 적용범위

김준성(대구외국어대)

오늘날 공직사회의 가장 큰 폐단은 부정부패와 연루되는 사건일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대통령들은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청렴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및 청와대 최측근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도 역대정부처럼 반부패정책을 제도화하였지만, 특히 권력과 연루된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한 공무원범죄는 주로 뇌물범죄의 형태에 속한다. 특히 뇌물범죄는 그 구조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부패범죄의 유형이다. 하지만 뇌물범죄는 외형적으로 뇌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서 형사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범죄유형이다. 그러나 뇌물범죄는 사안에 따라 그 사후에 국가 및 국민적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최적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뇌물죄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뇌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하거나 입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직무행위가 공익성을 가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의 규정 및 특가법 제4조의 규정과 특경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준공무원으로서 뇌물죄의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형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어도 특가법 제3조의 법정형을 형법 제132조에 상응하는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가법 제4조에 수뢰자와 더불어 증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 아울러 특가법 제2조의 제1항 각호의 수뢰액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제2항은 단서조항으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가중에 제한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형법 제134조의 규정은 뇌물요구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뇌물요구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법문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6조에 규정된 추적·환수의 실효성을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환형처분의 규정을 입법하여야 한다.

주제어: 뇌물죄, 부패, 부패방지, 공무원범죄, 뇌물의 개념